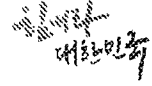


함께 이겨낸 역사, 오늘 이어갑니다.



방 위 사 업 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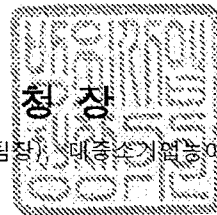
제목 공고문 게시 및 홍보 요청 (방산 중소·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, 20-3차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근거
 - 가. 방위사업청 훈령 제470호 “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 규정”
 - 나.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-135 ('20. 1. 9.) 2020년 방산 중소·중견기업 대상 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
3.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기술보호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를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게시명칭 : 방산 중소·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(20-3차) 공고
 - 나. 공고기간 : '20. 7. 1.(수) ~ 7. 30.(목) 18:00
 - 다. 비 고 : 기존 게시된 공고문 존재시 본 공고문으로 대체 요망

붙임 : 공고문 및 제출서류 양식 각 1부. 끝.

방 위 사 업 청 청

수신자 대변인, 국방기술품질원장(국방벤처실장, 기술보호팀장), 방(중)소기업중·대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,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



해군소령 이민우 과장 전결 2020. 6. 26. 전준범

협조자

시행 기술보호과-2758 (2020. 6. 26.) 접수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

/ <http://www.dapa.go.kr>

전화번호 02-2079-6974

팩스번호 02-2079-

/ ftstblue@korea.kr

/ 대국민 공개

붙임.

방위사업청 공고 제 2020 - 51 호

방산 중소기업·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

방산관련 기업의 방산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방산 중소기업·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30일

방위사업청장

< 요약 >

사업명	지원내용	지원금액 (기업당)	모집기간
방산 중소기업·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(20-3차)	○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 (UTM) 임차비용 12개월분을 지원	최대 250만원	7. 1.(수) ~ 7. 30.(목)

< 지원사업 세부내용 >

1. 지원 내용

방산관련 중소기업·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*의 임차료 (협약체결 당해월로부터 총 12개월분, 최대 250만원 한도)

* 통합보안장비 (UTM : Unified Threat Management) : 방화벽, 침입차단시스템,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

*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(IPS 등)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, '구매'가 아닌 '임차'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

2.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

○ (지원대상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,

-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“대상기관”
- 「방위사업법」 제34조에 의한 “방산물자”를 납품하는 업체
- 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에 의한 “방위산업체”로 지정된 업체
- “대상기관” 또는 “방산업체”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개선사업에 참여중인 업체

* 관련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

◦ (지원 제외대상)

- 휴 · 폐업중인 기업,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*로 관리중인 기업
 - * 금융질서문란자 : 신용정보관리규약(전국은행연합회)에 따라 연체, 대의변제, 대지급 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, 법정관리,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
-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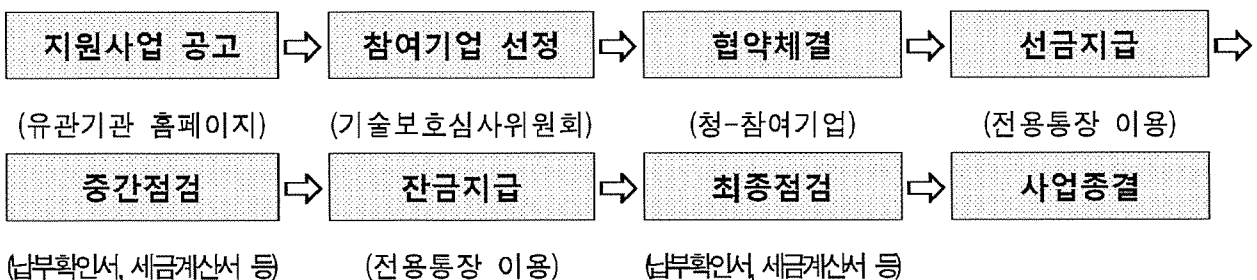
3. 사업기간 및 지원 규모 :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, 각 기업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(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금)

- *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월로부터 12개월간,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(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)
- *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,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7. 1.(수) ~ 7. 30.(목) 18:00
- 신청 방법 : 제출서류 작성 후 E-mail 송부 (security2018@korea.kr)
 - * 제출서류는 “별지 3” 에 포함
 - 계속지원 시 : 계속지원 신청서 (잔여 지원기간 2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)
 - 신규지원 시 :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(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), 방산업체지정서(해당시)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5. 사업수행 절차



6. 선정방법

-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 방위사업청 기술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

< 지원대상기업 선정 기준 우선순위 >

1. 보안관제 운영기간
2. 방산업체 지정기업
3. 방위산업기술 보유기업
4.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
5. 매출액 및 인력이 적은 기업(중소기업 우선 지원)

※ (참고사항) 계속지원 신청기업이라 할 지라도, 사업예산 현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

**7. 문의처 :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사업담당자
(02-2079-6978, security2018@korea.kr)**

별지 :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양식 일체